

사법시험합격취소
취소

대 법 원
제 1 부
판 결

2001. 1. 17. 원본영수	인
2001. 관철승달	인

사 건 2000두8790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

원고, 상고인 1. 김

2. 김

피고, 피상고인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

행정자치부장관

소송수행자

원 심 판 결

서울고등법원 2000. 10. 6. 선고 2000누7492 판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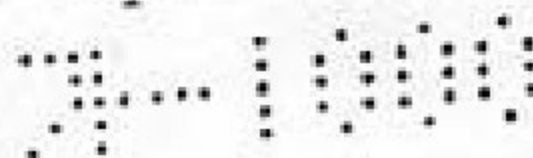
주 문

상고들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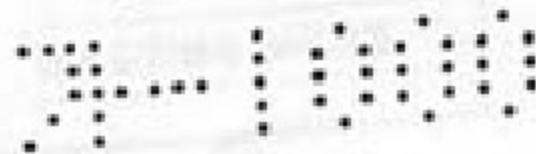
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
과 같이 판결한다.

2001. 1. 17.

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_____

 대법관 서 성 _____

 주 심 대법관 유지담 _____



정본입니다.

2001. 1. 22
2000 .

대 법



법원사무관 김 현 우

